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한-베 FTA 내 HS CODE 기준년도 변경 발표
 - ('22.6.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한-베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 09/2022/TT-BCT 발표
 - 주요 내용은 한-베 FAT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2017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2.8.1.부터 적용됨
 - 현재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HS CODE 기준년도는 2012년이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준년도 2017 HS CODE 사용 중
- *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내 제7란에는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표기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양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참고 1 (한-베 FTA 협정서 내 부록II 품목번호_2017년 기준) -

HS CODE	물품	물품 세부 규정	비고
2202.91	논알콜 맥주	RVC(40) 및 제품 원료는 1211.20, 1302.14, 1302.19에 속해야하며 원료는 WO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0306.31	바닷가재 및 각종 바다 새우	WO	변경 (0306.21 → 0306.31)

※위 변경사항 외 변경된 품목은 시행규칙 09/2022/TT-BTC 내 부록II 참고

- 참고 2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에 따른 용어) -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 8란 기입사항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	“ WO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 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3. 세 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1. “CTC” 2. “RVC %” (예 : RVC 45%) 3. “CTH+RVC 40%” 등 4. “Specific Proceses”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2. 시사점

- ‘22.8.1.부로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기업들은 취급하는 물품의 HS CODE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 필요

3. 출 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베 FTA 내 HS CODE 기준년도 관련 변경 사항.
2022.06.01. 09/2022/TT-BCT.

4.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 통관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특이사항 없음 / 지속 모니터링 추진